

근대 한국 민사판결록의 편찬과 기술(記述)의 분석

- 법원 소장 판결록을 중심으로 -

이승일*

목 차

I. 머리말
II. 재판사부의 절차와 재판 관련 기록
III. 민사판결록의 편찬과 기술(記述) 항목의 분석
1. 민사판결록의 현황과 편찬 과정
2. 민사판결록의 기술(記述) 항목 분석
IV. 맺음말

[국문 요약]

법원기록보존소에는 근대 민사판결문이 다량 소장되어 있다. 이 판결문들은 토지, 가옥, 전당, 상거래 등의 민사 분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및 가옥의 가격, 임차료(賃金), 이자율, 전당 등 사회경제적 정보까지 풍부하게 알려줌으로써 근대 이행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아카이브즈 컬렉션이다.

그리고 이 민사판결문에는 근대시기 사법제도의 변화와 일제 침략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록관리 흔적이 남아 있다. 민사판결문은 이러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 점에 주목하여 민사판결문의 현황, 편찬, 정리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사판결문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주제어] 재판소, 민사판결문, 편찬, 記述, 법원기록보존소

* 강릉원주대 사학과 조교수. bheea89@hanmail.net

I. 머리말

법원기록보존소에는 근대 민사판결록이 다량 소장되어 있다. 이 판결록들은 전당 및 토지 관계, 분묘(墳墓), 가사(家舍), 채권-채무관계, 어음, 소자 및 도지(賭地), 상거래 등 사인(私人)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쟁과 재판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당 및 가옥의 매매가격, 임차료(賃金), 이자율, 전당 등 사회경제적 정보까지 풍부하게 알려줌으로써 근대 이행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아카이브즈 컬렉션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대한제국인의 일상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각종 분쟁이 새로운 사법체계 하에서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사판결록의 자료적 가치가 높음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법사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탓도 있으나 법원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일부의 판결서가 2009년에도 학계에 공개되고 있고¹⁾ 판결서 원본의 열람이 곤란하여 학계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판 관련 연구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근대 사법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연구하는 제도사 분야이다.²⁾ 이 연구에서는 재판소구성법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고 재판소의 종류 및 성격, 재판사무, 소송제도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 근대 사법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제의 사법침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민사판결록을 직접 활용한 사례 연구이다.³⁾ 이 연구들에서는 가옥, 토지, 전당을 둘러싼 분쟁을 연구하거나 외국인

1) 법원기록보존소에는 1895~1910년 사이에 생산된 판결록 403권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서 법원 도서관이 법원기록보존소로부터 151책을 대여받아서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하고 원본은 2009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https://library.scourt.go.kr/main.jsp>, 2016.3.1.).
 2) 문준영,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한국법사학회, 2012); 문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와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 39(경북대 법학연구원, 2012); 김창기,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사권 신장』, 『한국근현대사연구』 67(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손경관, 『민형소송규칙의 제정과 의의』, 『법사학연구』 30(한국법사학회, 2004).
 3) 이영록, 『한말 외국인 대상 민사재판의 구조와 실태』, 『법과 사회』 41(법과사회이론학회, 2011); 이영록, 『광무 건양기 부흥산 이종매매 및 이종집안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44(한국법사학회,

과의 민사분쟁을 분석하였으며 법과 재판을 소재로 연구를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기록관리학계를 중심으로 민사판결문에 대한 기록관리학적 분석이 수행되었다.⁴⁾ 이 연구들에서는 민사판결문의 소장 현황을 소개하고 소송의 유형과 그 성격을 조사함으로써 판결문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만, 이 연구들은 첫째, 민사판결문을 직접 분석하지 아니하고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서 해당 판결문들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 수집, 편제, 정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판결문의 분석에서 중요한 판결서의 구성 요소 및 목차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 민사판결문에는 목차가 붙어 있고 목차에 사건 제목이 기술되어 있는데, 사건 제목이 판결서를 작성한 시점에 부여된 것인지 아니면 조선총독부 또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에 새롭게 부여된 것인지, 또한 사건제목이 판결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⁵⁾ 셋째, 기왕의 연구들은 낱장의 판결서를 토대로 각종 통계정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편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판사무의 절차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판결서는 낱장정보 뿐만 아니라 편제정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⁶⁾

2011); 문준영, 「구한국기의 임대차 분쟁과 전세관습」, 『법사학연구』 48(한국법사학회, 2013); 문준영,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관행」, 『법학연구』 52-4(부산대 법학연구소, 2011); 문준영, 『경성공소원 민사판결원본철을 통해 본 한말의 민사분쟁과 재판』, 『법학연구』 22-1(충남대 법학연구소, 2011); 이승일, 『대한제국기 외국인인 부동산 전매 및 매매와 민사 분쟁』, 『법사학연구』 49(한국법사학회, 2014); 이승일, 『민사판결문을 통해 본 근대 한국의 도지권 분쟁과 처분』, 『역사와 현실』 89(한국역사연구회, 2013).

4) 황외경·이영하, 『잡오·대한제국기(1895~1905) 민사재판 판결문 활용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3(한국기록학회, 2015); 박지영·리상용, 『근대 한국(1895~1912)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사건 분포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3(한국서지학회, 2015).

5) 사건제목은 두 번에 걸쳐서 새롭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조선총독부가 한성재판소 및 고등재판소(영리판) 등의 민사판결문을 재정리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건제목을 창작하였다. 두 번째는 법원도서관에서 2009년도에 민사판결문을 DB로 구축하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기술 정보를 추가하였는데 이 때 또 다른 사건제목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조선총독부 및 법원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기는 하지만 일부 오기,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6) 대한제국기 기록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다음의 논문 참조. 이영하, 『대한제국 시기의 기록관

근대 민사판결문은 한국의 재판소에서 생산되었으나 일제에 의한 한국 사법침략의 양상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1907년부터 일제본인 법무보좌관이 주요 재판소에 임용되어서 사법절차와 재판에 간섭하였고 1907년 12월 재판소구성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에는 1908년부터 일제본인 판사, 검사, 서기 등이 대거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사법제도 간섭은 판결서의 작성과 편철 및 정리 방식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특히, 1908년부터 새롭게 설치되기 시작한 재판소는 종전 재판기관이 가지고 있던 판결서의 일부를 이관받았고, 1910년 한국병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해당 판결서를 인수받아서 편제, 재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목차와 표지가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⁷⁾ 이 점에 주목하여 민사판결서의 생산, 편제 및 정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사판결문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법원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판결문 400여책(1895~1910년 사이)에 생산된 자료)을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151책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판결문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큰 한계이다.

II. 재판사무의 절차와 재판 관련 기록

한국에서는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면서 소송의 절차, 재판의 방식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 법률의 시행 전까지 한국에는 전문적인 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민사와 형사의 구별도 없었으나 재판소구성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재판소, 한성 및 개항장재판소, 순

리, 『기록학연구』 19(한국기록학회, 2009); 이영하, 『통감부의 기록장악과 조선침략』, 『기록학연구』 41(한국기록학회, 2014); 박성준,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편철과 분류』, 『서지학연구』 41(한국서지학회, 2008).

7) 법원도서관에서는 해당 기록물을 '구한말 민사판결문'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근대 민사판결문으로 부르기로 한다.

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 등의 전문 재판기관의 설치가 제도화되었고 각 재판소의 역할과 기능도 아울러 규정되었다. 우선, 지방재판소는 일체의 민사 및 형사사건을 관할하도록 하였고, 한성 및 개항장재판소는 관할 구역 내의 일체의 민사 및 형사재판과 외국인 및 조선인 사이의 분쟁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심 재판소로서 순회재판소가 규정되었는데 개항장재판소 및 각 지방재판소의 상소를 담당하되 매년 3월에서 9월 사이에 법무대신이 지장하는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다. 고등재판소는 합의재판으로서 한성재판소 및 인천재판소에서 행한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관할하도록 하였으며⁸⁾ 이후에는 개항장재판소,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심도 관할하는 등 기능이 강화되었다.⁹⁾

하지만 각급 재판소 중에서 실제로 개설된 것은 한성재판소와 고등재판소 뿐이었다. 순회재판소는 개설된 적이 없었고 지방재판소는 각도의 감영(監營)에, 개항장재판소는 감리서에 각각 함설되었으며 관찰사, 목사, 감리 등이 판사를 겸임하는 등 전임 판검사를 제대로 임용하지도 않았다.¹⁰⁾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조직 및 운영이 전면 개편되지 못한 이유는 새로운 재판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게 되면 종전 지방관이 행사하던 권리를 박탈하여야 했기 때문에 반발을 초래하였다. 또한, 재판소 설치와 전임 사법관을 임용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객격의 사법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서 지방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예산과 시간, 공간을 줄이는 임시 방안으로서 기존 조직과 인물들에게 사법관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판사 및 검사는 별정(別定)한 규칙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때는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판소구성

8) 『裁判所構成法(법률 제1호, 1895.3.25)』, 『韓末近代法令資料集(1)』, 190-195면.

9) 『監營, 留守營, 及其他地方裁判의 上訴를 高等裁判所에서 受理 裁判하는 件(법률 제7호, 1895.4.29)』, 『韓末近代法令資料集(1)』, 363면; 『監營, 留守營, 及其他地方裁判의 上訴를 高等裁判所에서 受理 裁判하는 件 改正(법률 제8호, 1896.8.15)』,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152면.

10) 金柄權, 『韓國近代裁判史』(韓國司法行政學會, 1974), 55면.

법 부칙 제56조에 당분간 지방관이 사법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 하지만, 재판사무절차와 처리 방식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많이 나타났다.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된 날인 1895년 3월 25일에 『재판소치부규정통칙(裁判所處務規程通則)』이 함께 공포되었는데¹²⁾ 이 규정에서는 판사와 검사 외의 직무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우선, 각 재판소는 각부의 판사가 매주 개정하고 소송정일(訴訟廷日)을 미리 정하여 관할 대중(公衆)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곳에 개최하도록 하였다. 개정일(開廷日)에는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을 연속하여 심리 판결하여 여러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제1조). 소송인을 소환하는 시과 및 심판(審判)하는 순서는 소송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판사가 정하였다(제2조). 각 재판소에는 출근기록부(出進記)를 두어서 판사가 개정 시각 전에 날인하고 재판소 수반판사는 즉시 조사한 후에 검인하도록 하였다. 민약에 출근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 사유 및 시말을 출근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초록을 재판소 수반판사가 매월 법무대신에게 제출하였다(제3조).

판사는 문서가 도착하는 즉시 그에 대한 처리안(辦理事)을 문서상 여백 또는 별지에 기재하여 서기에게 하부하고 문서의 처리(辦理)가 일시(一時)에 종료하지 못한 때는 후일 제출할 기한을 미리 정하여 서기에게 하부하도록 하였다(제4조). 특히, 재판선고서 기타 중요한 문서의 원본은 판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제5조). 심판하는 사건의 순서는 각부 또는 각 판사가 도착하는 사건의 호수(號數)에 따라서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었다(제7조).¹³⁾ 재판소의 서기는 판임관(判任官)으로서 법무대신이

11) 『裁判所構成法(법률 제1호, 1895.3.25)』, 『韓末近代法令資料集(1)』, 197-198면. 고등재판소는 재판장 1인, 판사 2인, 검사 2인, 서기 3인, 廷吏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재판장은 법무대신 또는 법무집관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판사는 법무 집주임관 또는 한성재판소 판사 중에서 국왕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단, 협판 이하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법무대신이 奏薦하였다. 특별법원은 영국의 변호사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재판소로서 법무대신의 추천에 의하여 설치되는 임시규였다. 이 법원은 합의재판으로 행해지며 재판장 1인, 판사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재판장은 법무대신으로 보하고 판사 중에서 1인은 중추원의관으로 보하며, 3인은 고등재판소 판사, 한성재판소 판사 또는 법무 집주임관 중에서 법무대신의 추천에 의하여 국왕이 임명토록 하였다.

12) 『裁判所處務規程通則(칙령 제50호, 1896.3.25)』, 『各裁判所規程(奎 17287-9)』.

13) 『裁判所處務規程通則(칙령 제50호, 1896.3.25)』, 『各裁判所規程(奎 17287-9)』.

일명하였는데 법정 내의 일체의 신문(訊問), 공술(供述), 변론(辯論) 등을 기록하고 소송사건에 관한 서류 일체를 조제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외에도 기타 재판소의 서사(書寫)에 관한 사무 일체를 수행하였다.¹⁴⁾ 재판정의 개정(開廷)은 재판소 또는 그 지청에서 행하고 법무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소 및 그 지청 외에서 개정(開廷)할 수 있었다. 민사 및 형사의 재판정(庭)은 일체 공개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895년 4월 29일에 「민형소송규정」을 발하여 민사 및 형사소송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서 종래의 재판 관례가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적 소송제도를 일부나마 시행한 측면이 있었다. 우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절차를 구분하고 그 절차를 범규로 정하였다. 둘째, 근대적인 심급제도의 관점에서 상소절차를 정비하고 재판 집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셋째, 소송당사자의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대리인(代人)에 의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었다.¹⁵⁾

특히, 재판에 소송되는 각종 서류가 크게 변화하였다. 원래, 조선 제래의 소송 및 판결은 일반적으로 소장(訴狀)을 관청에 올리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소장(訴狀)에 수령의 결정사항을 작성하여 돌려주는데 그것을 보통 제사(題辭)라고 칭하였다. 전통시대에서는 분쟁의 내용을 수령이 검토, 결정된 후에 결정문을 되돌려주었기 때문에 관청에서는 소송의 주체, 절차, 과정 및 최종 결정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지의 내용과 관청의 결정사항을 간단히 기록하여 두었다.¹⁶⁾ 그러나 민형소송규정에서는 소송 관련 서류를 공식화하였고 판결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및 피고가 일정한 양식의 소장(訴狀) 및 답서(答書)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4) 『裁判所構成法(법률 제1호, 1895.3.25)』『韓末近代法令資料集(1)』, 196년.

15) 문준영, 『판결과 수면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한국법사학회, 2012), 253면.

16) 최윤오 옮김, 『재판으로 민나본 조선의 백성: 충청도 진천 소송록(해안, 2013); 김경숙, 『16세기 判廳書의 처리절차와 廳丞의 의미』, 『고문서연구』 24(한국고문서학회, 2009).

〈서식 1〉 원고가 작성하는 소장(訴狀)의 양식
출처: 『民刑訴訟에關한規程(법부령 제3호, 1895.4.29)』,

訴狀	職業
住址	姓名
原告	年齒
住址	職業
被告	姓名
	年齒
訴求	原告는 原告에 對하여 貸錢本邊을 合하여 備 事와 並此訴訟의 費用을 償報할만호 旨의 裁判호를 請願호
事實	原告는 미리 被告에게 邊若干을 約호야며 錢若干을 貸與호야시나 被告는 其期限이 經過호야도 備報 證據物은 別로 添付호
開國 年 月 日	原告 姓名 (印)
某某裁判所長	原告 姓名 座下

원고는 소장(訴狀)에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고 상대방(피고)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한 후에 주장의 요지와 사실관계를 간단히 기록하였다. 피고도 소장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본인 및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변론(소답)의 요지와 사실관계를 기록한 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소장을 작성도록 한 것은 아니고 소액의 경우에는 구두 변론으로 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금전과 물건을 막론하고 영전 50냥 이하에 속하는 것은 소장 및 소답서를 제출하지 말고 구두(言辭)로 하도록 하였다.¹⁷⁾

〈서식 2〉 피고가 작성하는 소답(訴答)
출처: 『民刑訴訟에關한規程(법부령 제3호, 1895.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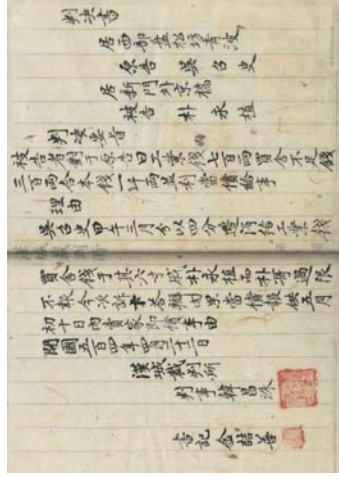
訴答	職業
住址	姓名
原告	年齒
住址	職業

17) 『民事訴訟의 訴訟書에關한 件(부령 제4호, 1895.윤5.3.)』, 『各裁判所規程(奎 17287-5)』.

〈서식 3〉 판결 신고서 양식
출처: 『民刑訴訟에關한規程(법부령 제3호, 1895.4.29)』

開國 年 第何號	開國 年 月 日
判決書 住址 原告 被告	裁判所印
職業 姓名 職業 姓名	某某裁判所判事姓名 (官印) (會審判事 數名 有否 時에는 連署) 書記 姓名 (官印)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여 債錢을 辦償함이 可후. 原告訴求에 應할만은 理由가 無호. 訴訟費用은 原告(被告)의 主張을 備券證據에 照하여 其正直함을 認호. 此에 對하여 被告의 訴求(原告의 陳供)은 其當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지 아니하니 因하여 原告의 訴求(被告의 訴答)은 其理由가 有호	

소송 및 재판과정에서 소장, 답서, 관련 증거기록 등이 제출되었고 판사는 관련 기록과 변론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판결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정부는 법



〈그림 1〉 1895년 4월 22일 판결서(제28권)

22) 『裁判所細則(법부훈령, 1896.12.26)』,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202년.
23) 『裁判用紙에 關한 件(법부 고시 제11호, 1895.4.10)』, 『韓末近代法令資料集(I)』, 344면.

부 고시 제1호를 발하여 재판용지는 백지(白紙)를 절반으로 하여 10행의 인찰지(印札紙)를 만들고 1행에 20자씩 기입하고 등서(謄書)하도록 하였다.²³⁾ 〈그림 1〉이 민형소송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죄초

被告 姓名 年齒	被告 姓名 (印) 座下
訴答의 要旨 被告는 原告의 訴求에 應할만호 者아나니 訴訟費用은 原告로부터 辦償함이 可호라고 裁判官을 請願호	某某裁判所長 姓名 座下
事實 原告는 被告에게 債錢을 備償지 아니하여야 云호야도 被告는 會其使用호 事가 無호고 從호야 被告로 서는 毫라도 備償호 忘호 事가 無호니 其事實은 證據에 對하여 明白호	
開國 年 月 日	

소송인은 재판정(敍廷)에서 진술 변론하기 전에 소장(訴狀) 및 답서(答書) 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소송 및 재판과정의 모든 서류는 정서(淨書)하여 2통을 작성하고 도말 개찬(塗抹改贋)¹⁸⁾한 곳에는 직인을 찍도록(押印)하였다. 답서(答書)는 소송 제출일 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판정에서는 소송인, 증인 등이 진술한 요령과 기타 사건에 필요한 사항을 필기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판사 및 서기가 기명(記名)하고 압인(押印)토록 하였다.¹⁹⁾

소송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대로 심판하도록 하였다. 판결은 결심(結審)한 후에 곧바로 시행하되, 기일을 정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나 결심한 날부터 7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²⁰⁾ 재판소세칙에서는 민형사상안은 접수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하여 무자정 시간을 끝면서 권리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만약 견련(牽連)²¹⁾ 미결(未決)된 것이 있으면 매월말에 주명(註明)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단 증인(詞證)이 다른 곳에 있어서 부득불 소환(超還)하여야 할 자는 원근에 따라서 왕복하는 날을 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²⁾

18) 도말 개찬(塗抹改贋)은 판결서를 작성한 후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글자의 표면에 무엇인가를 칠한 후에 글자나 문장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民刑訴訟에關한規程(법부령 제3호, 1895.4.29)』, 제7조~제11조.
20) 『民刑訴訟에關한規程(법부령 제3호, 1895.4.29)』, 제12조~제14조.
21) 어떠한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과 얽혀서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판결서를 재판기관에서 보존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판결의 원본을 소송 당사자에게 되돌려주었으나 민형소송규정 제15조에서는 소송인이 판결서의 등본(謄本)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規費)를 납부한 후에 청구하거나 또는 허가를 얻어서 등사(謄寫)하도록 하고²⁸⁾ 판결서는 해당 재판소가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원본을 재판소가 보존하는 것으로 판리 원칙이 변경됨에 따라서 각 재판소는 해당 판결서를 정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발생하였다.

III. 민사판결록의 편제과 기술(記述) 항목의 분석

1. 민사판결록의 현황과 편제 과정

1) 민사판결록의 소장 현황과 정리

현재, 법원기록보존소에는 1895~1910년 사이에 생산된 판결록이 약 403권 소장되어 있다.²⁹⁾ 이 판결록들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의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이 시기 소장량의 약 37%에 해당되는 151권은 2009년에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지털 이미지 방식으로 원본을 공개하였다. 나머지 약 250여권은 디지털화가 수행되지 못하여 법원기록보존소 보존서고에 보관되어 있다.³⁰⁾ 이 판결록은 감오개혁기 및 대한제국 재판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사관, 이사청, 통감부 재판소에서 재판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영사관 및 통감부 재판소 판결록은 일본인 상호간의 분쟁도 있으나 한국인과

28) 『民刑訴訟에關한規程(법부령 제3호, 1895.4.29)』, 제15조.

29) 법원기록보존소에 필자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결과이다.

30) 국가기록원에도 근대 민사 판결록이 소장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해당 판결록의 목록이나 원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장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활용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부를 소개하면 1895년의 민사판결본(CJ/A0016244), 1897년 민사판결본(CJ/A0016238), 1901년 민사판결본(CJ/A0016239), 1904년 민사판결본(CJ/A0016241), 1909년의 민사판결본(CJ/A0016206), 민사판결본(CJ/A0016207) 1910년 민사판결본 첩(CJ/A0016212), 1911년에 생산된 제2심 민사판결본(CJ/A0016386) 등이다.

의 판결서이다. 10행으로 되어 있으며 판심(版心)에 재판기관(한성재판소)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모든 판결서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1895년 5월 4일 판결서를 비롯하여 많은 판결서들이 8행인 것을 보면 8행 또는 10행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판결서의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판결의 양상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재판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결송임안(決訟立案)이 있었다. 결송임안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사표시만을 기록하지 않고, 원피고의 소지와 제출한 증거의 진부를 소송 진행 순서에 따라서 기입하고 가장 끝에 판결사항을 기록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결송임안은 소지와 증거서류와 판결서와 당사자의 주장 등이 하나의 문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산만할 수 있었고 소송이 몇 대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양이 많이 늘어질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판결서의 등장으로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확장판결의 기판력, 증명력 등을 담보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²⁴⁾

특히, 이 판결서는 개인의 권리 등을 국가기관이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일단 소송인이 판결을 집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사건 관할 재판소에 청구하여 집행명령서를 받아서 처리토록 하였다. 재판소가 집행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정리(廷吏)²⁵⁾에게 명하여 집행을 완료토록 하였다.²⁶⁾ 다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었는데 상소 기간은 판결이 있던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할 수 있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은 재판소와 본인의 거주와 거리에 따라서 80리를 기준으로 1일씩 연장하였다. 상소재판소는 원재판소에 조회하여 소송기록의 송치(送致)를 의뢰할 수 있었다.²⁷⁾

24) 송찬, 『開化期 近代的 民事訴訟法制 導入에 관한 研究』(서울대석사학위논문, 2004), 28면.

25) 1895년에 개정된 『廷吏規則(부령 제9호, 1895.7.17)』에서는 廷吏에게 판심관의 대우를 하도록 하였으며 소관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 처분을 행하고 민사에 관한 원고 피고를 소집하는 책임을 부과하였다. 『各裁判所規程(奎 17287-5)』.

26) 『民刑訴訟에關한規程(법부령 제3호, 1895.4.29)』, 제16조~17조.

27) 『民刑訴訟에關한規程(법부령 제3호, 1895.4.29)』, 제20조~제24조.

일본인 사이의 분쟁도 일부 수록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법원기록보존소가 원문을 공개한 151권, 14,500여 건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법원기록보존소 민사판결서 건수(1889~1918년)³⁰⁾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main.jsp>)

연도	1889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건수	3	5	4	237	516	329	207	452
연도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건수	94	175	217	238	198	595	1,359	1,093
연도	1908	1909	1910	1911	1912	1916	1918	미표기
건수	1897	3,069	3,268	383	197	1	1	39
합계	14,577							

14,500여건에 달하는 판결서는 낱장이 아니라 여러 판결서들을 묶은 편제 형태로 남아 있다. 각 판결서는 재판을 직접 수행한 기관에서 작성한 후에 낱장 형태로 보관해 오다가 후일 어느 시점에 표지, 목차 등이 새롭게 첨부되어 편제되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표지와 목차의 재질상태가 판결서 원본의 재질 상태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판결서가 누락(분실)된 채 편제되어 있고 전혀 상이한 재판기관의 판결서끼리 합철되어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각급 재판소에서 낱장 형태로 보관하다가 편제의 과정을 거치는 시기는 일체의 사법권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895년 재판소규정³¹⁾이 제정된 이래로 재판소조직과 재판사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가 1908년과 1910년이다. 1907년 12월에는 재판소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³²⁾ 1908년부터 전국 각지에 재판소가 신설되었고 각 재판소에 일본인 판사, 검사, 서기 등이 대량으로 임용되어 판결서를 정리, 편철, 보관하는 기법에서 일본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1908년에는 민형소송규칙이 제정되어 재

31) 1889년부터 1894년 사이의 12건은 일본 영사관에서 생산된 것이다.

32) 『재판소규정(법률 제8호, 1907.12.23.)』.

판사무절차와 방식도 일부 변화하였다.³³⁾ 뿐만 아니라 1910년 한국법률 후에는 조선총독부 재판소로 변경되면서 조선총독부 재판소처무규정에 따라서 판결서가 관리되었다. 빼르면 1908~1909년 한국 재판소에 일본인 사법관이 대량으로 배치되면서 종전 재판기관의 판결서들을 이관받아 정리하였거나 1910년 한국병합 이후 어느 시점에 조선총독부가 정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한제국기와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판결서들의 보존과 관리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록 교수는 대한제국기의 판결서가 많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판결서에 표기된 사건번호가 누락된 것이 있고 또한 판결신고 일자로 정리할 때에 몇 일 혹은 몇 주씩 건너뛴 시기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³⁴⁾ 이영록 교수의 추정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 사건번호는 소송사건의 접수번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교수의 견해는 다른 자료를 통하여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사자간에 화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재판소에 호소하였다는 점에서 사건번호는 판결서의 수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사법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당시에 모든 분쟁이 소송부터 신고로까지 이어져서 판결서를 작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재판이 참여하여 신고에 이르는데 많은 시간,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당사자가리 화해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판결서가 누락된 것이 명백한 경우도 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판결서 목차에는 재판당사자, 사건번호, 사건제목 등이 재판 관련 정보가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비교관에 “判決書無”라고 표기된 사례가 있다. 이는 재판이 종결되어 판결서까지 작성되었으나 목차의 작성 시점에는 판결서 원본이 분실되어 편제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례는 이영록 교수의 추정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분실 및 유실의 시기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기에 이미 판결서

33) 『民刑訴訟規則(법률 제13호, 1908.7.13.)』.

34) 이영록, 『한말 의구인 대장 민사재판의 구조와 실태』, 『법과 사회』 41(법과사회의문화회, 2011), 183면.

의 유실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각 판결서가 편책된 시점과 그 과정에서 부가된 다양한 관리 흔적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판결서의 누락 여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사판결문이 편철되어 있는 상태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법원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사판결록은 모두 제1권부터 제151권까지 각각 권번호가 빠짐없이 부여되어 있다. 원래의 민사판결록에는 권번호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원도서관에서 해당 판결록들을 이관받아서 관리하면서 편의상 부여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민사판결록에는 이 같은 권번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다만, 권번호의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

예컨대, 1895년 4월 22일에 민형소송규정에 입각한 최초의 판결서가 작성되는데 이 판결서는 제1권이 아니라 제28권에 수록되어 있다. 1895년에 생산된 판결서들은 모두 제26권, 제27권, 제28권, 제29권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제26권은 1895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한성재판소에서 생산된 86건의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고, 제27권은 1895년 6월 4일부터 1907년 12월 17일까지 고등재판소와 평리원에서 생산된 39건의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8권은 1895년 4월 22일부터 같은 해 8월 17일까지 한성재판소가 생산한 123건의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9권은 1895년 4월 29일부터 1899년 7월 6일까지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 평리원 등에서 생산된 98건의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제1권은 표지에 공주구재판소가 재판기관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공주군과 정산군(서리 청양군수 판결)이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생산한 48건의 판결서가 묶여 있다. 제2권의 표지에는 공주구재판소가 재판기관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908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판결서 33건이 묶여 있다. 제3권의 표지에는 1899년부터 1909년까지 공주지방재판소가 생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충청남도재판소, 충청북도재판소, 공주군수, 해미군 수서리사군수 등이 작성한 판결서로 묶여 있다. 제1권, 제2권, 제3권 중에서 표지와 판결서 원본을 대조해보면, 재판기관이 일치하는 것은 제2권뿐이

다. 공주구재판소와 공주지방재판소는 1908년 8월 1일에 개칭되었기 때문에³⁵⁾ 제1권과 제3권의 판결록들은 기존 재판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공주구재판소 및 공주지방재판소가 설치된 이후에 표지와 목차가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1권부터 제14권까지는 모두 충청남도 지역의 재판기관에서 작성한 판결서들을 묶은 것이다. 15권부터 24권까지는 상소심 재판기관의 판결서가 묶여 있고 제25권부터 126권은 대체로 서울 지역의 판결서(이사청 및 통감부 법무원 판결서 포함)와 상소심 재판기관의 판결서가 묶여 있다. 이 중에서 경기재판소와 인천항 재판소의 판결서도 섞여 있다. 제127권부터는 인천 및 강화지역의 판결서(인천 지역의 이사청 및 영사관 판결서 포함)로 묶여 있다.

〈표 2〉 민사판결문의 재판기관

1	공주구재판소	16	대심원	31	한성재판소	46	한성재판소
2	공주구재판소	17	통감부 법무원	32	한성재판소	47	한성재판소
3	공주지방재판소	18	고등법원(1909-1910)	33	한성재판소	48	평리원(한성재판소)
4	충청남도	19	대심원	34	한성재판소	49	한성재판소
5	충청남도재판소	20	대심원	35	고등재판소(한성재판소)	50	한성재판소
6	공주구재판소	21	경상공소원	36	한성재판소	51	한성재판소
7	공주구재판소	22	고등법원(1910)	37	한성재판소	52	한성재판소
8	공주구재판소	23	고등법원(1910)	38	한성재판소	53	평리원(한성재판소)
9	공주구재판소	24	고등법원(1910)	39	한성재판소	54	한성재판소
10	공주구재판소	25	경성공소원	40	고등재판소(한성재판소)	55	한성재판소
11	공주구재판소	26	한성재판소	41	한성재판소	56	한성재판소
12	공주구재판소	27	고등재판소, 평리원	42	평리원(한성재판소)	57	한성재판소
13	공주구재판소	28	한성재판소	43	경기재판소	58	한성재판소
14	공주구재판소	29	고등재판소(한성재판소)	44	한성재판소	59	평리원(한성재판소)
15	통감부 법무원	30	한성재판소	45	한성재판소	60	평리원(한성재판소)
61	경성 일본영사관	76	경성지재	91	경성이사청	106	경성구재, 경성지재
62	경성 일본영사관	77	평리원, 한성재, 철원군	92	영두구재판소	107	경성구재, 경성지재
63	경성 일본영사관	78	한성재판소	93	경성지재, 공소원	108	경성구재, 경성지재

35) 공주구재판소 및 공주지방재판소는 1908년 8월 1일에 개칭되었다. 『各裁判所開廳期日』(법부령 제11호, 1908.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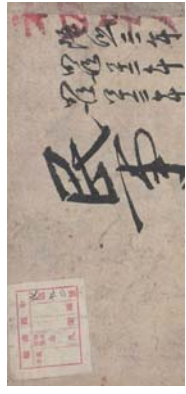
(정성이사정)		대심원	
64 경계판소	79 한성재판소	경상지계, 공소원, 대심원	109 경상구계, 경상지계
65 한성재판소	80 인천항재판소	경상지계, 경성공소원	110 경상지계, 경성공소원
66 한성재판소	81 경성지계	경상지계, 경성공소원	111 경상지계, 경성공소원
67 한성재판소	82 경계판소	경상지계, 경성공소원	112 경상지계, 경성공소원
68 평리원(하급심)	83 경성구계, 경성이사정, 통간부, 법무원	경상지계, 경성공소원	113 경상지계, 경성공소원
69 평리원(하급심)	84 한성 경성 인천항재	평리원, 한성재판소, 경성공소원	114 경성지계, 경성공소원
70 경계판소	85 경성구계	경성구계, 경성지계	115 경성지계, 경성공소원
71 평리원(한성재판소)	86 경성구계	경성구계, 경성지계	116 경성지계, 경성공소원
72 경성지방법원 (경성공소원)	87 경성구계	경성구계, 경성지계	117 경상지계, 경성공소원
73 한성재판소	88 경성지계, 경성공소원	경성지계, 경성지계	118 경성이사정, 법무원
74 한성재판소	89 경성지계, 경성공소원	경성지계, 경성지계	119 경성지계, 경성공소원
75 평리원(한성재판소)	90 경성이사정, 통간부, 법무원	경성구계, 경성지계	120 경성지계, 경성공소원
121 경성지계, 경성공소원	129 인천영사관	경성구계판소	145 강화구재판소
122 경성구계, 경성지방법원	130 인천일본영사관	인천구재판소	146 경기도 강화군
123 경성구계	131 인천구재판소	남포군	147 경성지계인천지부
124 元陽州區裁判所	132 일본영사관, 인천이사정	인천이사정	148 남포군
125 경성지계	133 인천이사정	인천구재판소	149 인천구재판소
126 경성구계	134 인천이사정	인천이사정	150 인천구재판소
127 인천영사관	135 인천이사정	강화구재판소	151 강화구재판소
128 인천일본영사관	136 강화구재판소	인천구재판소	144 인천구재판소

비고: ① 판결록의 재판기관은 표지에 표기된 것을 그대로 소개하였음
 ② 재판기관이 표지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서 원본을 토대로 필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번호에 마킹되어 있는 것)
 ③ 상소심과 하급심 판결서가 합철된 경우에는 양쪽을 모두 표기하였음. 단, 재판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1~2개 기관만 표기함

편제된 판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성재판소와 고등재판소(평리원)가 관할하던 서울 지역이 판결서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 충청, 경기 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편제된 판결서 내부에 다른 지역의 판결서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 지역 판결서가 2건, 경상도 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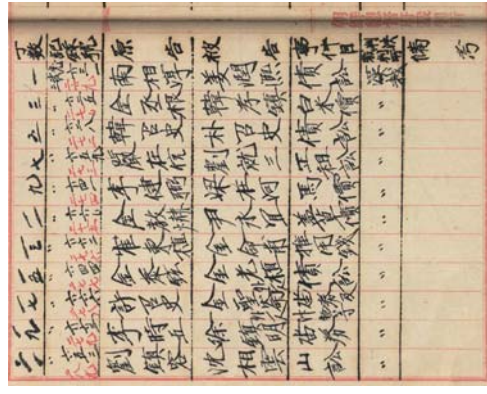
대구지방재판소 판결서가 1건이 남아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에도 공주구재판소와 공주지방재판소 판결서가 780여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권번호는 한국 법원에서 부여하였으나 편제는 그 이전에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일부의 판결록이지만 조선총독부 또는 대한제국기에 별도의 편책 번호를 부여하였고 편책도 시행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지와 목차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136권은 1909~1910년에 강화구재판소가 생산한 것으로 모두 37건의 판결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표지의 왼쪽 상단에 ‘甲類書類’(영구보존을 의미함)와 ‘民第九十二號’가 표기되어 있다. 이러



〈그림 2〉 민사판결록 제136권

한 표지의 작성 방식은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의 공문서철에서 볼 수 있다. 특히, ‘民第九十二號’는 낱장의 판결서가 아니라 해당 편책에 붙는 번호(권번호)이다. 제1권부터 제151권이



〈그림 3〉 민사판결록 제138권

지의 번호가 한국 법원이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라면 “民第九十二號”는 조선총독부가 편제된 판결서의 관리를 위하여 붙인 것이다. 다만, 모든 簿冊에 이 같은 편책 번호가 부여된 것은 아니며 상당수의 편책은 표지에 어떠한 표기도 없는 경우가 많다.

제38권은 편책의 주체와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이 판결록은 1899년에 한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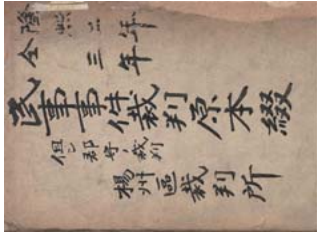
판소에서 생산된 106건의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38권에는 판결서 원본에는 ‘한성재판소’라고 판심(版心)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목차를 작성한 종이에에는 ‘조선총독부재판소’라고 판심(版心)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판결서 원본은 한성재판소가 작성하였으나 목차와 표지 및 편책은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직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표지에 표기되어 있는 재판기관과 판결서 원본을 작성한 재판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제151권의 경우, 표지에는 강화구재판소가 생산기관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판결서 원본은 강화군수가 1907년 9월 19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강화구재판소는 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10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09년 10월 13일에야 법무고시 제26호로 설치되었다.³⁶⁾ 그런데 앞 표지에 강화구재판소로 표기된 것은 종전까지 강화군수가 재판한 판결서를 강화구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이를 이관받았고 그 이후에 편책,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제2조에 따르면,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설치한 재판소의 개칭 전에 민사 형사의 소송은 종래의 재판소 및 군수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소의 개칭 전에 종래의 재판소 및 군수가 접수한 소송은 개칭과 동시에 관한 재판소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단 평리원에서 접수한 소송은 행정공소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³⁷⁾ 이에 따라서 관련 서류도 모두 이관되었을 것이다.

한편, 제92권은 1908년~1909년 사이에서 행해진 양주구재판소의 판결서이다.³⁸⁾ 실제 판결은 고양군수, 양주군수가 행한 것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기술되어 있으며 필기도구는 붓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표지는 일본어로 제목이 표기되었으며 목차를 기술한 필기도구도 붓이 아니라 펜으로 추정된다. 제92권도 판결서를 작성한 시점과 표지 및 목차, 편책한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36) 『여주, 강릉, 강화, 밀양, 김해, 하동구재판소를 개정하는건(법부고시 제26호)』, 『판보(1909.10.15)』.
 37) 『裁判所構成法施行法』.
 38) 『舊雜未民事判決文(제92권)』.

보여준다. 양주구재판소는 1909년 11월 1일에 개칭되었기 때문에³⁹⁾ 그 이전의 판결서가 개칭 이후에 수집되었고 추후에 일본인 관료가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제92권 표지



<그림 4-2> 제92권 목차



<그림 4-3> 제92권 판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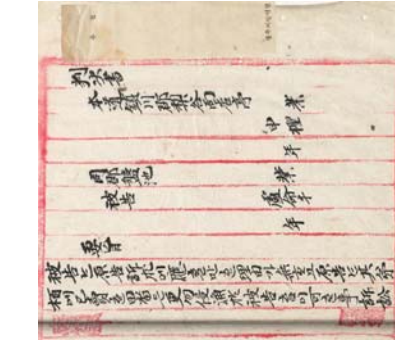
2) 민사판결록의 편책 기준

각 편책은 어떠한 기준으로 묶여 있을까. 모든 판결록이 일관성을 보이고 할 수는 없으나 많은 경우에 재판기관(생산기관)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1895년에 생산된 판결서 237건은 모두 4책으로 나뉘어 편제되어 있다. 재판기관으로는 한성재판소 220건, 고등재판소 17건이다. 28권은 1895년 4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생산된 한성재판소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고 제26권은 1895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한성재판소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7권은 1895년부터 1907년까지 39건의 판결서가 있는데 재판기관은 고등재판소와 평리원이다. 고등재판소가 1899년에 폐지되고 해당 기능을 평리원이 승계하여 같이 편책된 것이다.⁴⁰⁾ 제29권은 1895년 4월 29일 한성재판소 판결서에서 시작하여 1897년 7월 31일 판결서로 종결되는데 모두 98건이 합쳐되어 있다. 제29권 판결서 묶음은 하급심인 한성재판소의 판

39) 『통감부령 제28호(1909.10.21)』, 『통감부고시 제106호』.

40) 『裁判所構成法을改正하는件(법률 제3호, 1899.5.30)』.

결으로 끝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심인 고등재판소(appellate court)로 상소한 판결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제3권 판결서

그러나 같은 재판기관에서 생산된 판결서만으로 편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3권이 대표적이다. 제3권의 표지에는 공주지방재판소, 목차의 관심에는 공주지방법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은 1899년 2월 2일부터 1909년 8월 5일까지 충청도 지역에서 작성된 16건의 판결서로 구성되어 있다.⁴¹⁾ 충청남도 재판소 판결서 7건, 충청북도 재판소 판결서 4건, 공주군 판결서 4건, 해미군수서리 서산군수 판결서 1건 등이다. 동일한 재판기관이 아닌 여러 곳의 재판기관의 판결서가 같은 편제으로 묶인 것은 충청남북도 지역의 판결서가 나중에 수집, 정리되면서 <지역>을 단위로 하여 하나로 편제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⁴²⁾ 또한, 판결서 오른쪽에 한글 타자기로 “부전 청구지방법원”으로 표기된 부전지가 붙어 있다. 이것은 해방 이후 청구지방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도서관(법원기록보존소)으로 일괄적으로 이관하면서 이 같은 부전지를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민사판결록은 1895년 이래로 각 재판기관별로 관리되다가 1907년 12월 재판소구성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판결서들이 관할 재판소로 이관되었다. 이 때 일부의 판결서가 편제되었으며 편제의 기준은 재판기관을 단위로 하였으나 일부는 판결서가 분실된 탓으로 지역 단위로 묶인 경우도 있다.

41) 『舊韓末民事判決文(제3권)』.

42) 법원기록보존소가 공개하고 있지 않은 판결록 중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다른 지역의 판결록을 조사하면 더 상세한 원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민사판결록의 내적 질서

(1) 판결서의 내부 배열순서

1895년 민형소송규정에서는 사건의 접수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심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판결서의 번호는 해당 사건의 접수순서에 따라서 부여되었을 것이다. 다만, 판결은 결심(結審) 후에 곧바로 행하거나 날짜를 정하여 행할 수 있었으며 결심한 날부터 7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⁴³⁾ 따라서 판결서가 반드시 사건번호의 순서로 배열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판결서의 배열과 사건번호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 있는 지를 1895년 판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제28권에는 109건의 판결서가 1895년 4월 22일 판결서로 시작하여 1895년 8월 17일 판결서로 종결된다. 각 판결서에는 대체로 사건번호가 부착되어 있다. 판결서 번호를 일부 소개하면 72, 71, 61, 62, 75, 79, 93, 74, 90, 100, 101, 103 등의 순서로 편제되어 있다. 판결서가 사건번호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여러 건을 판결한 경우에는 판결번호의 순으로 다시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895년 5월 7일의 판결서는 모두 3건인데 개국 504년 제100호, 제101호, 제103호 순으로 편제되어 있다. 사건번호 제102호는 개국 504년 5월 19일 판결서에 부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드문 경우이지만 중복된 사건번호도 있다. 1895년 4월 22일 오조이(吳召史)와 박영식의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개국504년 제72호이고 1895년 8월 17일 류흥필과 오경연과의 분쟁도 개국504년 제72호이다.⁴⁴⁾ 1895년에는 판결서를 제작하고 보존하는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일부 오류가 나타났을 수 있으나 판결서의 배열순서는 사건번호와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판결서들은 날짜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제28권의 판결서들은 날짜순으로 잘 배열되어 있다. 첫 번째 판결서 날짜부터 소개하

43) 『民刑訴訟-關係規程(법부령 제3호, 1895.4.29)』, 제12조~13조.

44) 『舊韓末民事判決文(제28권)』.

차의 비교란에 해당 사실을 “이심판결무(二審判決無)”라고 표기하였다. 이는 목차를 제작하는 시점에 일부 판결서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성재판소 판결서와 고등재판소 판결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는 경우 비교란에 하급심 판결서를 “등본(謄本)”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⁴⁶⁾ 이는 제1심 재판기관인 한성재판소의 판결서를 등본(謄本)으로 받아서 고등재판소에 제출한 것임을 보여준다.

(3) 판결서의 위치 변경을 통한 재판절

민사판결문의 표지와 목차를 조선총독부 또는 1908년 신재판소에서 수행한 것이라면 대한제국기 판결서 원본까지 조선총독부가 재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제국 재판소가 편철한 판결서에 목차와 표지만을 부착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66권과 제68권을 통해서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 제66권은 1907년 4월부터 5월까지 생산된 한성재판소의 판결서 90권이 편철되어 있다. 표지 이면에는 조선총독부 판심이 표기되어 있는데 목차에 기록번호 제74호의 한성재판소의 판결서가 있다. 원고는 하야차랑(河野次郎)이고 피고는 김진혁(金鎭赫)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중간에 붉은 선으로 지운 표시가 남아 있다.⁴⁷⁾ 결과적으로 제66권에는 이 판결서는 존재



〈그림 7〉 민사판결문 제66권

하지 않으며 제68권에 편철되어 있다.⁴⁸⁾ 제68권은 제1심 재판소와 상소심 재판소의 판결서가 합철되어 있다. 이는 제66권을 편철할 당시에 해당 판결서를 제66권에 편입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하여 제68권으로 편철하였기 때문이다. 제68권으로 변경하려 했던 이유는 상소심 판결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추후에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제66권은 1907년 4월 1일 판결서부터 1907년 5월 31일까지 한성재판소 판결서만을 수록하고 있으나 제68권은 1907년 1월 2일 판결서부터 1907년 12월까지의 평리원 판결서(1908년 판결서 1건)와 제1심 판결서가 함께 합철되어 있다.⁴⁹⁾ 제68권에는 하야차랑(河野次郎)과 김진혁(金鎭赫)의 한성재판소 판결서와 평리원 판결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해당 판결서들이 처음부터 편철된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별 판결서 형태로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편철하는 과정에서 제66권에서 제68권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판결서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최재린-정의동, 이증하 외 1인-박치순, 이석교-김진석 사례에도 나타난다. 제66권 목차에 최재린-정의동, 이증하 외 1인-박치순, 이석교-김진석의 판결서가 기재되어 있다가 붉은 색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다. 이 3종의 판결서도 모두 제68권으로 이동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석교-김진석 판결서는 제1심 판결만 있고 제2심 판결서가 없다는 점이 비교란에 표기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한제국 재판소에서는 해당 판결서들을 생산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다만, 해당 판결서들은 편적이 안된 상태로 놓여 있다가 1908년 신재판소 설치 이후 또는 조선총독부가 판결서들을 입수한 후에 재정리하여 목차 및 표지를 덧붙여서 함께 편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대한제국기 재판소에서 편철한 것을 추후에 조선총독부가 목차 및 표지만을 덧붙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경우에는 대한제국

48) 『舊韓末民事判決文(제68권)』.

49) 한성재판소를 비롯하여 강원도 3건, 개성군 1건, 경기재판소 9건, 인천항재판소 2건, 죽산군 1건, 춘천군 재판소 1건, 평리원 23건, 한성재판소 28건 등 69권이 수록되어 있다. 여러 재판기원의 판결서들이 합철되어 있는 것이다. 각 1심 재판에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상소심 판결로 이어진 사례이다.

46) 『舊韓末民事判決文(제40권)』.

47) 『舊韓末民事判決文(제66권)』.

理由

被告의主張은對質에照하여其正直한 줄을認함 此에對하여原告의陳供은 幾類之屋을尹淳得에게放賣하였더니尹哥가因毀散賣하고基址까지被告에게斥賣하였으니既不實居하고毀家散賣하는境에는基址는矣可還推라하나已賣之家基을今不可推尋인데曠其毀家하고欲覓基址하는거시理不當然故로正當이라고함이可치 아니하니因하여原告의訴求是其理由가無함

이 사건은 판결서의 사실관계를 보면 전승(田訟)과는 관련이 없다. 이 소송은 전승이 아니라 가옥(家屋)과 그 기지(基址)를 둘러싼 분쟁이다. 정확한 제목을 붙인다면 “가사송(家舍訟)” 또는 “가사(家舍) 및 그 기지(基址)에 관한 건”으로 붙여야 한다. 법원도서관에서 사건의 제목을 부여하면서 판결서를 상세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작성한 목차를 참조하여 그대로 제목을 붙여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모든 판결서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사건에 어울리지 않는 부 적합한 제목이 붙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조선총독부가 재정리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여 판결서를 조사한 후에 목차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판결서를 정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법원에서도 판결서를 상세히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이 작성한 목차를 참고로 하여 사건명을 작성한 듯하다.

2) 법원도서관에서 명명한 사건 제목의 문제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록 원문을 공개하면서 판결서의 메타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이 때 표기한 사건 제목이 불확실한 것이 일부 있다. 1897년 7월 24일 한성재판소 민제760호 판결서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한성 동부에 거주하는 이점담이 한성 남서에 거주하는 이완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가세전(家貰錢)으로 제목을 붙였으나 법원에서는 가옥 전세금으로 표기하였다.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옥 전세금[家貰金]에 관한 건⁵⁴⁾

判決의 要旨

被告는原告 訴求에 應하여 家貰錢 一百七十五兩을 辦償함이 可함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함

理由

原告의主張은對質에照하여其正直한 줄을認함 此에對하여被告의陳供은 力綿未報라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여原告의訴求是其理由가 有함

위 판결서 내용만으로 가세전(家貰錢)을 전세금으로 해석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 소략하다. 만약, 이점담을 세입자로 추정한다면 전세금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 즉 이점담이 가옥 주인인 이완식에게 집세를 지불한 후 거주하다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집세(전세금)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완식이 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전세 분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점담을 집 주인으로 추정한다면 반대로 이완식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집세를 내지 못하자, 이점담이 이완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때의 집세는 월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한제국이 임대차 관행을 고려하면 전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⁵⁵⁾ 하지만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집세에 관한 건”으로 붙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음을 생각한다.

3) 판결서의 별도 권리 번호의 부차

많은 민사판결서 원문에 대한제국 재판소가 표기한 사건번호 외에 판결서

54) 『舊韓末民事判決文(제33권)』.

55) 조선 후기 세입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유승희, 『조선 후기 한성부 무주백자의 거주양상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40(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식 바깥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 흔적이 있다. 예컨대 建元民○○號, 光十一民○○號 등이다. 이러한 번호도 판결서의 목차 및 편제이 추 후에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흔적이다. 이를 제66권에 수록되어 있는 제63호 결석판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⁵⁶⁾ 제66권 광무 11년 4월 3일 판결록에는 유인형과 이종윤의 판결서가 있는데 판결서식 안쪽에 제63호가 검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서식 위쪽에 붉은 글씨로 “光十一—民207號” 호가 표기되어 있다. 제63호는 판결서를 작



〈그림 9〉 민사판결록 제66권

성하면서 부여된 것이 분명하지만 光十一—民207號”는 추후에 부기된 것이다. 다른 판결서들의 서식 바깥면에도 판결서를 작성하면서 부여된 사건번호 외에 붉은 글씨(또는 검은 글씨)로 표기된 별도의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⁵⁷⁾ 이 번호는 판결서가 편제되고 목차를 제작하면서 새롭게 부기된 것이다. 제66권의 앞쪽에 부착되어 있는 목차에는 검은 글씨로 제63호, 그 옆에 붉은 글씨로 “光十一—民207號”로 표기되어 판결서 원본의 번호와 동일하다. 제151권에도 이 같은 추가된 관리번호가 있다. 목차에는 각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1번부터 29번까지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다. 하지만 판결서 원본에는 이 사건번호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판결서식 바깥면에 사건번호를 나중에 부기한 흔적이 있다. 이 바깥면의 번호와 목차상의 사건번호가 일치하는데 이는 나중에 목차를 편성하면서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비교란에 “판결서무(判決書無)”로 표기되어 있는

56) 『舊韓未民事判決文(제60권)』.

57) 『제127호 판결서(1896.7.4)』, 『舊韓未民事判決文(제29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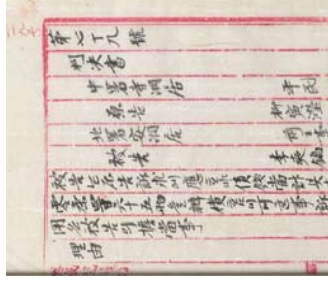
판결서가 있다. 목차상에는 사건의 정보(원고, 피고, 사건제목, 판결일)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판결서는 없는 것이다. 이는 해당 판결서 외에 별도의 장부가 있어서 해당 장부를 참고로 사건정보를 기재한 목차를 편성하였으나 판결서 원본은 분실하여서 해당 사실을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표지와 목차를 제작할 당시에 일부의 판결서가 유실된 것이다.



〈그림 10-1, 2〉 민사판결록 제51권의 목차 및 판결서

4) 일본의 사법점령의 흔적

대한제국기 일부 판결서에는 일본의 사법점령의 흔적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본인 법무보좌관(15명) 및 법무보좌관보(12명)들은 이토 히로부미의 사법개혁 구상에 따라서 1906년 12월에 임용되었고 1907년 1월부터 직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사법사무의 보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민형사사건의 재판과 판결 직접 관여하였다.⁵⁸⁾ 이러한 사실이 판결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야스미 도키



〈그림 11〉 민사판결록 제66권

58) 문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 39(경북대 법학연구원, 2016).

IV. 맺음말

근대 민사판결례에는 대한제국인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1895년 이래의 사법제도상의 근대적 변화 및 일제 사법침략의 흔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관련 학계에서는 판결록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대한제국인의 법 생활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1895년 이후의 사법상의 변화는 판결서의 서식, 편철 및 분류의 과정, 표지와 목차의 제작 과정 등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법원에 소장되어 있는 판결록을 활용하기에 앞서서 이에 대한 신중한 관찰과 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법원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판결록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 재판소처무규정통칙, 민형소송규정, 재판소제척 등의 법규에 의하여 변화된 재판사무절차와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새로운 재판소에서는 전임 사법관과 재판소 서기 등 사법관료가 임용되기도 하였고 종전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이 이루어졌다. 비록, 이 시기에는 행정과 사법의 분리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였고, 재판인력의 전문화도 충분하게 달성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도 있었으나 한국정부는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여 새로운 재판제도 도입을 서둘렀다. 이에 따라서 민사소송의 절차와 방식, 재판의 과정, 판결서의 서식과 편철 양식 등이 크게 정비되었다.

특히, 1895년 민형소송규정에 의하여 판결서 원본을 재판소가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종전과는 다르게 각 재판소에는 대량의 민사판결서가 남아 있게 되었으며 보존, 관리할 책임도 부과되었다. 이 판결서들은 첫째, 1895년 이래로 각 재판기관이 낱장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편철되었다.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서 1908년부터 새롭게 설치되기 시작한 주요 재판소에서 편철한 사례도 있었고, 1910년 한국병합 이후에 조선총독부가 편철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판결서 원본을 작성한 시기 및 주체와 표지 및 목차를 작성한 시기 및 주체가 서로 다르다.

둘째, 편철하는 기준은 재판기관이었다. 상소심 재판기관의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서가 합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제2심 재판소가 관찰

타로(安住時太郞)는 한성재판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제66권 제78호 판결서식의 위쪽 부분에 야스미 도키타로이라는 일본인 법무보좌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⁵⁹⁾ 이는 판결서의 작성에도 일본인 법무보좌관이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1908년부터는 일본인들이 판사, 검사 및 서기로 직접 임용되면서 판결서가 일본어로 작성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본인 판사가 직접 재판에 나서면서 판결서의 작성과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대한제국기 민사판결록은 사법제도의 근대화 양상 뿐만 아니라 일제의 사법 침략의 양상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행정구역의 오기

1895년 5월 20일 제1호 판결서는 장치덕과 김인환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판결서 정보에는 각 원고 및 피고의 주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경성(京城) 북부(北部) 가회방(嘉會坊) 재동계(齎洞契) 안동(安洞)

경성(京城) 중부(中部) 수진방(壽進坊) 상동계(相洞契) 임진(立鷹)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한성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성으로 고친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오해한 것에 비롯된다. 원문에는 “북부(北部) 가회방(嘉會坊) 재동계(齎洞契) 안동(安洞)”, “중부(中部) 수진방(壽進坊) 상동계(相洞契) 임진(立鷹)”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한성부로 변경하거나 원문 그대로 서술하여야 한다.⁶⁰⁾

59) 이 재판의 수반판사는 이병화, 판사는 윤방현, 이용상, 이원국이었고 주사는 정섭조였다.

60) 『舊雜未民事判決文(제29권)』.

일괄하여 판결서를 편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민사판결록은 1895년부터 식민지기까지, 더 나아가면 해방 후 법원에서의 관리상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근대 민사판결록을 균형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상의 흔적을 고려하면서 활용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金炳華, 『韓國近代裁判史』, 韓國司法行政學會, 1974.
 최윤오 옮김, 『재판으로 만나는 조신의 법상: 충청도 진천 사송록』, 해안, 2013.
 이영학, 『대한제국 시기의 기록관리』, 『기록학연구』 19, 한국기록학회, 2009.
 박지영·리상용, 『근대 한국(1895~1912)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사건 분포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3, 한국서지학회, 2015.
 김경숙, 『16세기 讞斷書의 처리절차와 讞送의 의미』, 『고문서연구』 24, 한국고문서학회, 2004.
 김항기, 『김오개회기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사권 신장』,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문준영, 『정성공소원 민사판결원본철을 통해 본 한말의 민사분쟁과 재판』, 『법학연구』 22-1, 충남대 법학연구소, 2011.
 _____, 『구한국기의 임대차 분쟁과 전세관습』, 『법사학연구』 48, 한국법사학회, 2013.
 _____,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 39, 경북대 법학연구원, 2012.
 _____,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 한국법사학회, 2012.
 _____,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관력』, 『법학연구』 52-4,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1.
 박성준,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편철과 분류』,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손정찬, 『민형소송규칙의 제정과 의의』, 『법사학연구』 30, 한국법사학회, 2004.
 유승희, 『조선 후기 한성부 무주택자의 거주양상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40,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이승림, 『대한제국기 외국인의 부동산 전당 및 매매와 민사 분쟁』, 『법사학연구』 49, 한국법사학회, 2014.
 _____, 『민사판결문을 통해 본 근대 한국의 도자권 분쟁과 처리』, 『역사문화실』 89, 한국역사연구원, 2013.
 이영택, 『광무 강양기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권양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44, 한국법사학회, 2011.
 _____, 『한말 외국인 대상 민사재판의 구조와 실태』, 『법과 사회』 41, 법과사회이론학회, 2011.
 이영학, 『통감부의 기록장악과 조선침략』, 『기록학연구』 41, 한국기록학회, 2014.
 황정 · 이영학, 『감오 · 대한제국기(1895~1905) 민사재판 판결문 활용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3, 한국기록학회, 2015.

하는 다양한 지역의 판결서가 합쳐되어 있게 된다. 다만, 판결서의 수량이 적어서 재판기관 단위로 편책하기 관련한 경우에는 관찰지역을 중심으로 합책하였다.

셋째, 판결서의 수록 순서는 판결신고일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모든 판결서가 날짜순서대로 정확히 배열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임에는 틀림없다. 판결서에 부차되어 있는 사건번호는 판결서의 편책 순서에 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넷째, 목차의 구성 요소도 시기에 따라 일부 변화하였다. 목차는 판결서를 작성한 시점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1908년 이후부터 조선총독부 전반기에 이르는 어느 시점에서 편책하면서 만들어졌으며, 검색의 편리성을 위하여 사건의 제목을 별도로 추가 작성하였다. 그러나 목차에 표기된 사건제목이 판결서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사판결서의 기본정보 입력에서 일부 오류 및 誤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판결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편결서식 바깥면에 사건번호 외에 별도의 번호가 부기된 경우가 많다. 이 번호는 판결서를 편책하면서 표지와 목차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기되었다.

여섯째, 대한제국기 재판소의 판결서가 일부만이 공개되고 있다. 현재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서울, 경기, 인천(강화), 충청(공주) 지역의 판결서 151권이 공개되었을 뿐, 진라도, 경상도, 강원도 지역의 판결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원기록보존소에는 1895~1910년 사이에 생산된 판결록이 약 400여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판결록에는 다양한 기록관리 흔적이 남아 있다. 비록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표기의 의미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고, 편책 기준이나 판결서의 배열 순서 등에서 단일한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되지 못하는 예외현상이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시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탓도 있었으나, 판결서를 작성하면서 편책되지 못하고 상당 기간 개별 판결서 형태로 남아 있다가 1908년 또는 조선총독부 설치 초기에

<Abstract>

An Analysis on the Filing and Description of The Decisions in Modern Korea

Lee, Seung Il*

The judicial archives in South Korea has a lot of the decisions. The records are for civil disputes over lands, houses, pawns, commercial transactions, etc. In particular, they have a rich stock of socioeconomic information such as the prices and rents of lands and houses, the interest rates and pawns, and therefore can be an archival collection that well shows the social state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modern times.

The decisions left the traces of various records made while the judicial system was undergoing changes and Korea was being invaded by Japan. Thus, the decisions needs to be studied in light of such changes. Hereat, this study reviewed the present state of The decisions as well as the process for its filing and arrangement so 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studies on the decisions.

[Key Words] Court, The decisions, Filing, Description, Judicial Archives

접수일 : 2016. 3. 2. || 심사게시일 : 2016. 4. 15. || 게재확정일 : 2016. 4. 27.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isto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